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4년 12월 31일

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전단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사가 보유한 석유비축시설에 비축할 석유(이하 “정비비축용 석유”라 한다) 또는 민간비축용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2. 정부비축용 석유를 민간비축용 석유로 구입하거나 민간비축용 석유를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민간비축용 석유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3.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4. 저유황중유를 일반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5.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로 한다.

제1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중 석유수입시에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석유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중 석유제품 판매시에 징수하는 부과금은 판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석유제품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비비축용 석유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민간비축용 석유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입·임차 또는 사용시점을 판매일로 본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유의 종류

· 질· 용도· 수입 물량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이를 차등징수할 수 있다.

⑤ 통상산업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당해 수입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법 제17조의2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5조의 제목“(수입금의 징수방법)”을“(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수입금은 수입금”을 “부과금은 부과금”으로 “금융기관”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입금”을 “부과금”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통관일까지 한국은행 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점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관매한 날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과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5조의2의 제목“(수입금의 징수유예)”를“(부과금의 징수유예)”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수입금”을 각각 “부과금”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수입금”을 “부과금”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수입금”을 “부과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때

①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15조의3의 제목“(수입금의 환급)”을“(부과금의 환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수입금”을 각각 “부과금”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유탄기유 원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저유황중유”를 “저유황중유 및 액화천연가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수입금”을 “부과금”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환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부과금 환급기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조의4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 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승계

의 경우에는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가 행한다. 이 경우 당해 시·도지사에게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을 허가함에 있어서 허가내용증 판매구역에 그 관할구역의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1]의 제1호의 가. 시설기준란중 "1,500킬로리터"를 "1,000킬로리터"로 한다.

[별표2]의 3. 사업의 개시 및 휴지란의 다.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란을 삭제한다.

[별표2]의 제9호란 다음에 제10호란 내지 제1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5호,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제2항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제1항본문, 제11조의3제1항제3호제11조의3제3항·제4항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제5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본문및 단서, 제25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항 및 별표2의 위반행위란의 제6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2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본문, 제26조 및 제27조제4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석유 또는 최초로 판매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판매한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종전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통기유 원료용으로 사용된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주요골자◇

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제정 및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맞추어 석유사업기금의 용도, 회계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령 제12조의2 내지 제18조)

나. 종전에는 유통유·유통기유 및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금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

다. 석유제품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판매시 부과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판매일부터 1월이내에서 2월이내로 완화함(령 제15조)

라.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석유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석유수입시에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하는 바, 이러한 환급대상에서 수입석유를 유통기유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령 제15조의3) (법제처 제공)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사업자 종류 별 과 징 금 액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업	송유관사업	석유판매업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주요소및용제판매	신고대상
10.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법 제22조	8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천만원	8백만원	3백만원
11. 시장의 지배·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게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2조	1억원	7천만원	7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2. 고의로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출고 제한을 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2조	1억원	7천만원	7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3.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한 때	법 제22조	8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8백만원	3백만원
1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22조	8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8백만원	3백만원
15.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침을 정해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2조 제3항	8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8백만원	3백만원